

# 최신 판례 예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주식 등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서면법규재산-2612, 2022.08.29

## 질 의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주식 등에 기반해
-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5, 2022.8.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5, 2022.8.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7항에 따라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 그 신주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신주가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신주를 취득한 자가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Marketing Tax consulting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시  
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함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부가령 제64조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재산세제과-1077, 2022.08.31

## 질 의

-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는 경우 기준 시점

## 회 신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순금산입방법’ 적용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법규국조-3584, 2022.04.13

## 질 의

- 질의법인은 자동차 제동장치, 조향장치, 현가장치 등을 생산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회사로 '16~'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중국, 미국, 인도

등에 소재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관련한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여 왔으나, 기존의 '세액공제방식'을 '손금산입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함

#### 질의

-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손금산입방식' 적용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 회신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손금산입방법을 택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같은 조 같은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면법규부가-4332, 2022.08.11

#### 질의

- 갑은 을법인의 조세탈루행위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탈세제보함
- 갑의 주장에 따르면, 위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탈세제보의 대상이 되는 추정사유

(A) 이외에 별도 추정사유(B)도 확인되어 위 추정사유들을 이유로 과세처분하였고(같은 과세연도에 A, B 발생 전제)

-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을법인은 B추정사유가 위법함을 이유로 불복을 제기하여 현재 행정소송(위 과세처분 취소소송) 진행 중임

#### 질의

-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에서 탈세제보 대상 추정사유(A) 및 별도 추정사유(B)가 확인된 결과 행해진 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B추정사유에 대한 피제보자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탈세제보자가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자가 조세탈루에 관한 탈세제보를 하고 이에 따른 세무조사에서 탈세제보 대상 추정사유(A) 외에 별도의 추정사유(B)도 확인되어 위 추정사유들을 이유로 행해진 과세처분에 대하여, 해당 피제보법인이 위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